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## 權利範圍確認

〈大法院 第2部 判決〉(1985. 11. 26)

事件番號 : 85후 26

裁判長 : 정 기 승

關與法官 : 전 상 석 · 이 회 창
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권천수(부산시 동구 수정 5동 산 17)
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 : 전대성(부산시 서구 괴정 3동 240)
3. 原 審 決 : 特許廳 1985. 1. 26字, 1983年 抗告審判(當) 第226號 審決
4. 主 文 : 原審決을 破棄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.
5. 理 由 :

被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的 上告理由 第1점을 본다. 民事訴訟上 必要증사실의 하나인 公知 또는 현저한 사실과 意匠法上 新規性이 부인되는 意匠의 公知公用 사실과는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전자는 증거없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公知, 公用인 여부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, 다만 意匠의 公知, 公用사실이 소송상 公知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도 그 공지 공용성의 인정에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것이다.

原審決이유에 의하면 特許廳 抗告審判所는 이 사건 登錄意匠의 정면도(원심결에 평면도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)에서 직4각형의 문짝이나 목욕탕 옷장을 여러층으로 형성시킨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은 이 사건 意匠의 出願前에 當業界에서 공연히 실시되어 公知된 것이라고 認定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權利를 認定할 수

없다고 전제한 후, 이 부분을 제외하고 위 登錄意匠과 이 사건(가)호 意匠을 대비관찰하여 (가)호 意匠은 위 登錄意匠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않는다고 判斷하였다.

그러나 위 原審決 理由와 기록을 살펴보면 原審決이 문짝과 옷장의 형상모양이 公知, 公用이라고 認定한 것이 어떠한 증거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알 수 없고, 그 公知 公用上이 審判節次上 證據를 요하지 않을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訴訟上 必要증사실인 公知 또는 현저한 사실과 같이 본 취지인지의 여부조차도 분명치 않다.

결국 原審決에는 證據判斷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.

2. 그러므로 다른 上告理由에 대한 判斷을 생략하고 原審決을 破棄하여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의견으로 主文과 같이 判斷한다. <※>